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
----------	------

발의연월일 : 2021. 11. 22.

발의의원 : 김정태 의원, 김보경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를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강화 및 영리거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들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 개정(안 제1조, 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 나. 겸직신고 내용 현행화 및 공개(안 제7조)
- 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주기적 확인 및 관리(안 제8조)
- 라.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를 “제46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의장에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6조제2항”을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의원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신고 내역을 점검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 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46조 ----- ----- ----- ----- ----- -----.
제7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u>의장에게</u>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u><신 설></u>	제7조(검직신고) ① ----- ----- 제43조제1항 -----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제44조제2항 ----- ----- -----. ⑥ <u>의장은 의원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검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신고 내역을 점</u>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② (생략) <u><신 설></u> 제9조(영리 목적 거래 등의 금지) ①~② (생략) <u><신 설></u>	<u>검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u>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검직 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u> 제9조(영리 목적 거래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u> 1. <u>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u> 2. <u>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u> 3. <u>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u> <u>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u> <u>④ (현행 제2항과 같음)</u>
---	---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관련)

[illegible]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

(인)

달성군의회회장 귀하

□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2021.1.12., 전부개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제44조(의원의 의무)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2016. 9. 27.>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